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2020. 9. 24.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목차]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기초발제자료]

Ⅰ. 논의 경과 ····· 2

Ⅱ. 판결서 공개 추진·경과 ····· 4

1. 전자우편 예규에 따른 판결서 사본 제공 및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 방문 열람 ····· 4

2. 확정 판결서 인터넷 열람 ····· 9

Ⅲ. 비교법적 검토 ····· 13

1. 미국 ····· 13

2. 독일, 일본 ····· 15

Ⅳ.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 여부 ····· 16

1. 판결서 공개 관련 기본적인 찬반 논거 ····· 16

2. 설문조사 결과 ····· 16

3.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 여부에 대한 기존 논의 정리 ····· 17

4.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 관련 법적 쟁점 ····· 20

5. 분과위원회 논의 ····· 28

Ⅴ. 공개 시기 및 공개 방법 ····· 33

Ⅵ. 보완 조치 ····· 36

1.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공개제한 신청권 인정 여부 ····· 36

2. 비실명처리 관련 ····· 42

Ⅶ. 사법행정자문회의 주요 논의 사항 ····· 47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2020. 9. 24.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1.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공무원 면책 규정의 부재가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기본적으로 일치함. 다만 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나뉘었음

<table>
<tr><th>원칙적 입장</th><th>주요 논거</th><th>구분</th><th>주요 논거</th></tr>
<tr><td rowspan="2">확대
(6명)</td><td rowspan="2">· 법관의 책임성 확보
· 법적 근거 충분
· 면책 규정 의미 小</td><td>민사 등 先공개
(4명)</td><td>· 민·형사 사이의 사생활 민감도 고려
· 무죄추정의 원칙 등 고려</td></tr>
<tr><td>민·형사 병행
(辯 2명)</td><td>· 전관예우 폐해 방지(특히 형사 사건)</td></tr>
<tr><td rowspan="2">신중검토
(4명)</td><td rowspan="2">· 추가 입법이 바람직
· 필요성 少</td><td>공개시 先민사
(3명)</td><td>· 다수의견과 같음
· 민사 항소심 판결 후 1심 판결 같이 공개 의견(2명)</td></tr>
<tr><td>공개시 민·형사 병행
(1명)</td><td>· 민·형사 구분 不要</td></tr>
</table>

2.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하는 경우, 그 시행 이후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판결 후 상소기간이 지난 다음 판결서 공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미확정 판결서는 확정 판결서와 마찬가지로 통합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되, 확정/미확정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편집이 가능한 TEXT_PDF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함(5명). 다만 제공 형태와 관련하여 현행 IMG_PDF를 유지하자는 반대 의견이 있었음(3명)

4. 가.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 대해 사건관계인의 공개제한 신청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확정 판결서 공개 제한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대법원 규칙, 예규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 시 확정 판결서와 같은 방식의 비실명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가독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 정비 등 인적·물적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초발제자료]

I. 논의 경과

1. 제5차 사법행정자문회의 안건 제안

▣ 2020. 4. 9. 오승이 위원 대표제안

● [안건 제안 위원] 김순석, 김진석, 박균석, 오승이, 윤준, 이광만, 최한돈(7명)

● 제안의 주된 취지

- 공개 확대 찬반을 둘러싼 두 가지 논의의 대립

■ [확대 논거] 국민의 알 권리, 재판 공개의 원칙, 사법 절차의 투명화 및 법률산업 발전 등

■ [반대 논거] 개인정보 보호, 인격권 보호, 사회적 혼란 등

- 판결서 공개 확대 관련 여러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분과위원회 검토 회부**할 필요 있음

▣ [논의 결과] 사법지원실 보고 받은 후 논의하기로 함

2. 제6차 사법행정자문회의 논의

▣ 2020. 5. 14. 사법지원총괄심의관 기초 보고

▣ 의장 의견

● **[기본적 입장]** ① 국민의 알 권리 확대 위해 미확정 판결서 공개 필요, ② 순차적 공개(민사⇨형사), ③ 비실명화 조치 및 공무원 면책 조항 필요

● **[문제점]**

- **①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

■ 2011년 민소법·형소법 개정으로 **확정 판결문** 공개 ⇨ **반대해석**상 **미확정**

판결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음.

■ 1996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함)을 근거로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

- ② **면책조항의 부재**

■ **확정**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이 있음(민소법 제163조의2 제3항, 형소법 제59조의3 제3항)

■ **미확정** 판결의 공개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1]에 따라 **무과실책임**이 적용될 수 있음

- ③ **공개제한 신청권의 근거 규정 부재**

■ 확정 판결에 대한 공개제한 신청권 규정을 미확정 판결의 경우에도 유추할 수 있는지 여부

▣ 전반적인 의견의 요지

● **미확정 판결 공개에는 대체로 찬성 의견**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 필요

● **텍스트 파일**로 제공함이 타당

▣ 기타 의견

● 공개를 전제로 할 때 **판결문 작성 방식**에 대한 개선 사항 검토(이광만, 김미경 위원)

● 판결서 공개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 비실명 업무를 참여관이 주도(윤준 위원)

● 2013년 이전 형사 판결, 2015년 이전 민사 판결도 공개 대상에 포함(최한돈 위원) ⇨ 이 경우 소송당사자 등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의장)

● 가독성 확대를 위해 비실명 처리 완화(김순석 위원)

1) 증명책임의 전환 규정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 **결정 사항**

- 관련 법률 개정 전 미확정 판결서의 ① **공개 실시 여부**, ② **공개 시기**, ③ **공개 방법**, ④ **보완 조치**에 관한 연구·검토를 위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 회부**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2020. 9.경 제1차 보고 예정

3.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논의 경과

가. 회의 경과

▣ **제6차 회의: 2020. 6. 26. 오후 3시 ~ 6시**

▣ **제7차 회의: 2020. 7. 27. 오후 3시 ~ 6시**

▣ **제8차 회의: 2020. 8. 24. 오후 3시 ~ 5시**

나. 논의 사항

▣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 여부 (법적 근거, 면책 규정 문제)**

▣ **공개 시기**

▣ **공개방법 (TEXT_PDF 제공 여부 등)**

▣ **보완조치 (공개제한 신청권, 비실명조치 등)**

Ⅱ. 판결서 공개 추진경과

1. 전자우편 예규에 따른 판결서 사본 제공 및 법원도서관 특별 열람실 방문열람

가. 개요

1) 전자우편에 따른 판결서 사본 제공

▣ **인터넷 열람가능 판결서를 제외한 대법원 및 하급심 사건의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방문,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

2)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 방문열람

▣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특별창구를 통해 법원 내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직접 검색·열람하도록 하는 제도(법관과 같은 수준의 검색·열람이 가능)**

☞ 위 두 가지 제도는 **동시에 시행**된 것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관계(특별열람실에서 열람·검색한 다음 전자우편으로 개별 신청하는 방식)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나. 추진 경과

▣ **1996. 12. 31. 정보공개법 제정 ⇨ 1998. 1. 1. 시행**

●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특정사건의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확정판결**에 대하여 허용하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는 삭제하여 제공함

▣ **2004. 12. 31. 사법개혁위원회[2]의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 재판기록 및 정보의 공개는 재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법관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재판 내용의 확인을 통하여 사법절차를 보다 더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 **하급심 판결의 경우 하급심 판결공보 등의 수록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고 각급 법원의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주요 최신 판결을 비실명처리 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면적 공개까지 이어지려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의 발생 방지를 위한 비실명 처리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그와 연계하여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006. 1. 16.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3] 보고**

---

2) 2003. 8. 노무현 대통령, 최종영 대법원장이 공동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대법원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임.

3)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안을 구체적인 개혁 입법안으로 완성하고, 그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2005. 1. 대통령 자

3. 특별창구를 통한 판결문검색시스템의 활용 방안

가. 특별창구의 마련

○ 법원도서관에 특별창구를 마련하여 위 법원 내부용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문검색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함

○ 외부 열람자는 위 컴퓨터를 통하여 판결문을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음

나. 열람대상자 및 이용방법

○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이용대상자를 ①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원생 및 대학교수, ② 국가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소속 기관장의 의뢰로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③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정함

○ 특별창구에서는 검색·열람만 가능하고 판결문 출력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신청에 따른 이메일 송부 방법을 활용하게 함

4. 판결문 이메일 송부 방안

○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당해 판결문을 제공함

○ 대법원 및 각급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제공코너를 신설하여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판결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신청인의 이메일로 송부함

○ 현재의 정보공개청구보다 편리한 제도이고 법원도서관의 특별창구를 통하여 판결문을 검색한 이용자들도 이메일 송부제도를 통하여 판결문 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음

○ 현재는 확정판결에 한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전향적으로 개선하여 **미확정판결에 관하여도 이메일 송부**를 할 계획

▣ 2006. 4. 25. 관련 규정 각각 제정

● 현행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2조 (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

① **모든 국민**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이 예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판결문은 대법원 등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확정, 미확정의 모든 판결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제외한다.

1.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

문기관으로 설립된 위원회임.

2. 2015. 1. 1. 이후 확정되어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문[4)]

3. 가사 사건의 판결문

4. 소년보호 · 가정보호 · 아동보호 · 성매매관련보호 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 ·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결정문

④ 제3항 본문에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판결문 제공의 신청방법)

① 판결문을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당해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법원(법원기록보존소 또는 관할 고등법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판결문은 해당 판결문을 이관한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 그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정보통신망 · 방문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판결문 제공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 등의 홈페이지의 판결문 제공 신청 코너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판결문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자우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2. 제공을 원하는 판결문의 **사건번호**
3. 신청인이 원하는 판결문의 제공방법

제6조 (판결문의 제공방법)

①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대상 판결문 내용 중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에 따라 비실명 처리**한 후 당해 사본을 전자우편 · 우편 · 모사전송 또는 직접제공의 방법 중 신청인이 원하는 제공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문을 제공할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 또는 변형하는 작업은 판결서공개관리시스템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③ 판결서공개관리시스템은 판결문 제공 업무 담당자, 공보관 · 기획법관 등 업무상 필요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현행 「판결문 검색 · 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제2조 (특별창구의 설치 등)

4) 제1, 2호의 제외 사유는 민소법·형소법에 따라 공개되는 확정 판결문이어서 전자우편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① 판결문의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를 법원도서관에 설치한다.
② 특별창구에는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및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법원도서관장은 법원도서관 직원 중에서 판결문 검색·열람 업무의 담당자(이하 '업무 담당자'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 (검색·열람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내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특별창구에서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다.
1.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및 대학교수
2. 국가기관,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소속 기관장 또는 단체장의 의뢰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② 법원도서관장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목적임이 명백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판결문의 검색·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검색·열람의 방법 등)

① 판결문의 검색·열람은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신청인 본인만이 할 수 있다. 판결문의 검색·열람시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포함)를 지참하여야 한다.

② **특별창구에서 판결문을 검색·열람함에 있어서는 검색·열람 대상 판결문을 출력하거나 그 전자자료를 내려 받아서는 아니 되고,** 검색·열람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운영 현황

1) 전자우편에 따른 판결서 사본 제공

▣ **모든 국민은 판결문을 보유 또는 보존하고 있는 대법원(법원행정처), 각급 법원 및 법원기록보존소에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음**

● 제공받고자 하는 판결서의 **법원 및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

▣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 전부(미확정 포함)를 대상으로 함**

● 인터넷 열람 가능 판결서와 가사사건 판결서 등 제외

▣ **판결서 제공 신청이 접수되면 비실명화 사업소에서 비실명처리를 완료한 후 판결서를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함**

2)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 방문열람

▣ **사실상 신청자 대부분을 승인함(∵내규 제3조 제1항 제3호를 넓게 봄)**

▣ **종합법률정보시스템 및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 판결 전부를 검색·열람할 수 있음**

● 가사/소년 사건은 제외

▣ **검색·열람만 허용(대상 판결문을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없음)**

● **비실명처리되지 않은 판결서를 제한 없이 검색·열람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있음

▣ **장소: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컴퓨터 4대)**

▣ **이용현황**

● 하루 이용자 약 40명(이용가능시간: 1시간 30분, 최대 이용가능시간: 3시간)

● 1일 예약 최대인원 20명(예약자가 미사용한 시간은 현장 신청인에게 이용 승인)

● 약 2주 전부터 신청 가능(이용일 기준 2~3일 전 사용승인)

2. 확정 판결서 인터넷 열람

가. 개요

▣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사건의 비실명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임**

나. 2011. 7. 18. 형소법·민소법 개정

▣ **2011. 7. 18. 법률 제10864호 개정 형사소송법 (2013. 1. 1. 시행)**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 제2항 제3호[5] 또는 제6호[6]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0864호, 2011. 7. 18.>

제1조(시행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

2.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및 그에 대한 상소심 사건에서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 물건의 명칭 · 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항(전자적 방법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포함한다)

제2조(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 복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한다.

▣ 2011. 7. 18. 법률 제10859호 개정 민사소송법 (2015. 1. 1. 시행)

제163조의2(확정 판결서의 열람 · 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 ·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0859호, 2011. 7. 18.>

① (시행일) 이 법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확정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다. 추진 경과

▣ 2011. 7. 18. 형소법·민소법 개정 ⇨ 확정 판결문 인터넷 등 공개

▣ 2012. 11. 비실명화 프로그램 및 비실명화 검수시스템 구축 완료

▣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 인터넷 검색·열람 허용

▣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 판결서 인터넷 검색·열람 허용

▣ 2019. 1. 1. 판결문 공개방식 대폭 개선

- 2018. 8.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에 따른 것임
- **통합 인터넷 검색시스템** 구축, 형사판결서 **임의어** 검색 가능

라. 운영 현황

▣ **판결이 확정된 이후 비실명화 사업소에서 판결서의 비실명처리를 완료한 후 판결서공개관리시스템에 등록함**

▣ **누구든지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판결서와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선거 판결서를 하나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검색, 열람할 수 있음**

▣ **제외되는 판결서**

- 미확정 판결서, 2012. 12. 31. 이전에 확정된 형사판결서 및 2014. 12. 31. 이전에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선거 판결서
- 소액사건,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서

Ⅲ. 비교법적 검토

1. 미국

▣ 소송기록(판결서 포함)의 공개

- 미국 연방법원은 PACER[7]를 통해(pacer.gov) 소송기록 전부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8]으로 함
- 판결서는 소송기록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당연히 공개됨 ☞ 판결의 확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님
- [임의어 검색] PACER 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9]. 일부 연방항소법원, 연방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다만 Westlaw, LexisNexis 등 사설 법률데이터베이스 업체에 판결이 제공되므로, 위 사설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임의어 검색이 가능함
- 미국 사실심 판결서의 특징
  - 제1심 법원에서 사건 접수 후 재판(Trial)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 비율은 5% 이내임. 이는 민·형사 사건 모두 마찬가지임.
  - 그 5%의 대부분이 배심재판(Jury Trial)으로 진행되므로, 제1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법관의 논증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판결서는 극히 일부임
  - 비배심 재판, 즉 판사 재판(Bench Trial)으로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형사 사건은 구두로(orally)로 간략한 이유를 곁들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사 사건의 경우에도 승소 측 변호사가 판결 초고를 작성하여 오는 경우도 많음
  - 미국에서 항소심은 순수한 법률심이므로, 사실심 판결은 제1심뿐임

7)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ic Record
8)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함[Craig v. Harney 331 U.S. 367(1947)]
9) 법원, 사건명,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으로 검색 가능함

☞ 미국에서 공개할만한 내용이 있는 사실심 판결서는 소수의 민사 사건뿐임

-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요 주(State) 법원도 연방법원과 대동소이함

▣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Redaction, Sealing

- 미국 법원은 소송기록 전부를 공중(Public)에 공개하므로, 그 과정에서 사생활, 영업비밀 등의 보호 조치가 요구됨
- 이러한 개인정보 등의 삭제 작업을 '**Redaction**'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의 주체는 당사자임[10] ☞ 법원 직원은 Redaction에 대한 책임이 없음
-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에 대한 추가적인 편집을 요구하거나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봉인(Sealing[11]))을 명할 수 있음 ☞ **Protective Order**
- 형사 유죄 판결 중 범죄사실의 비공개
  - 연방 사법회의는 2008. 3. 형사판결서 공개 등과 관련한 사생활 보호 정책[12]을 마련함
  - 위 가이드라인의 비공개 유형 중 형사 유죄 판결의 범죄사실[13]이 포함되어 있음 ⇨ 형사사건의 종국 판결서에는 상세한 범죄사실의 기재가 공개되지 않음[14]

▣ 시사점

- 미국에서 판결서 공개와 관련하여 확정, 미확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10) 당사자 측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비공개 버전(sealing version)과 공개용 편집 버전(redacted version)으로 나누어 제출하기도 함

11) 민사사건의 경우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밀 보호, 소년범의 사생호할 보호 등을 위해 소송기록을 봉인(sealing)하는 것이 연방법원의 실무라고 함[Federal Judicial Center, "Sealed Cases in Federal Courts", 2009. 10.].

12) Judicial Conference Policy on Privacy and Public Access to Electronic Case Files

13) statement of reasons in the judgement of conviction

14) 죄명, 범죄종료일, 양형 등만 간략하게 표시됨

● 미국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판결서를 넘어 **소송기록** 전부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생활 등의 보호를 위한 보완조치(redaction, sealing)를 마련하고 있음. 특히 형사 유죄판결의 이유는 공개되지 않음

☞ Public Access와 Privacy 사이의 조화를 추구함

2. 독일, 일본

가. 독일

▣ **연방 대법원 판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

▣ **하급심 판결의 경우, 공개할 이익이 명백한 일부 판결에 대해서만 선별적 공개**

▣ **공개된 판결에 대해서는 임의어 검색 가능**

나. 일본

▣ **최고재판소 판결, 하급심 판결 모두 선별된 극히 일부의 판결만을 공개함**

▣ **공개된 판결에 대해서는 임의어 검색 가능**

다. 시사점

● 독일·일본 모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륙법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재판공개의 원칙'을 헌법상 원칙으로 삼고 있음[15)]

● 판결서 공개와 관련하여 확정, 미확정을 구분하지 않으나, 전면공개가 아닌 공개할 가치가 있는 판결을 **선별**하여 **비실명 처리** 후 공개함

● 독일·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과거 판결서 공개 현황**과 **유사**한 상황이고, 현재의 우리 판결서 공개 현황에 비하여는 **크게 소극적**임

15) 독일 기본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독일 법원조직법에는 있음), 연방 헌법재판소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헌법원칙임을 선언한 바 있고, 일본국 헌법 제82조는 우리나라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Ⅳ.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 여부

1. 판결서 공개 관련 기본적인 찬반 논거

▣ 찬성 논거

- 판결서 공개 확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공개**[16]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함. 사법작용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통하여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법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재판(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

▣ 반대 논거

- 판결서 공개 확대로 소송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짐
- 판결서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공범에 대한 수사 방해나 범죄 수법 모방으로 인한 공공 안전에 대한 위해, 국가기밀 유출 등 공익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음

2. 설문조사 결과

가. 전국 법관

▣ 기간: 2018. 4. 16. ~ 4. 27.

▣ 대상: 전국 법관 2,983명 중 응답자 1,117명(응답률 37.45%)

- 미확정 **민사** 판결서 공개 여부

  - 불필요 70.01%(782명) › 필요 28.47%(318명)

- 미확정 **형사** 판결서 공개 여부

16)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불필요 78.2%(874명) ❯ 필요 20.59%(230명)

나. 법원 직원

▣ **기간: 2019. 6.**

▣ **응답 인원: 204명**

● 미확정 판결 **실명** 공개 여부

- 반대 80.3% > 찬성 7.4%, 의견 없음: 12.3%

● 미확정 판결 **비실명** 공개 여부

- 반대 48.3% > 찬성 28.1%, 의견 없음: 23.6%

다. 대한변호사협회

▣ **기간: 2018. 5. 31. ~ 6. 7.**

▣ **전국 회원 중 1,586명 응답**

● 모든 판결문 공개[17]

- 찬성 93% > 반대 6%

3.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 여부에 대한 기존 논의 정리

가. 미확정 민사 등(행정, 특허 포함, 이하 같음)·형사 모두 신중검토 입장

▣ **논거**

- 공적 인물이나 공적인 사안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서는 별도의 방식(공개된 법정에서의 판결 선고, 각급 법원 공보관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게시)을 통해 **공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음
- 그동안 공개된 사건의 판결서만으로도 학술적, 공익적 수요 충족 가능
- 여론 포함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재판이 독립되어야 하는 근본 가치 고려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판결서 공개로 인하여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커질

17) 확정·미확정 여부를 쟁점으로 하여 질문한 것은 아니었음.

수 있음

- 언론에 기사화되거나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공개된 판결서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유무죄에 대한 관심 집중으로 진행 중인 상급심 재판 또는 관련 사건의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판결 선고 직후에 공개해야 하므로 비실명화 작업 및 판결서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거나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과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증대될 수 있음

나. 미확정 민사 등·형사 모두 공개 입장

▣ 논거

-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서를 공개함으로써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
- 판례의 형성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판결서 공개제도의 도입취지 및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요청에 부합함
- 미확정 사건에 대한 판결서도 시간이 경과하여 확정되면 공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개 시기의 문제에 불과할 뿐 미확정 판결서와 확정 판결서 사이에 공개 여부를 달리할 본질적 차이가 없고, 공개의 범위나 분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는 비실명처리 또는 비공개결정을 통하여 달성 가능함
- 공개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미확정 판결서 출력 시 워터마크 등으로 미확정 판결서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등의 방안으로 대처 가능

▣ 금태섭 前 의원 발의 민소법·형소법 개정안[18] 내용임

● 주요 내용

-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열람 및 복사 허용
-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항 삭제**
- 검색 및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공
- **[면책 규정]**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법원공무원 손해배상 면책

18) 의안번호: 20-5780, 20-5782호(기간만료로 폐기)

▣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2018. 8. 21.자 건의문도 같은 취지임

■ 판결서 공개 확대

1.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판결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방식을 개선하고, **판결서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3. 판결서 공개 범위에 관하여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와 함께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재판공개 원칙**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차원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4. **공개된 판결서는** 민사·행정·선거·특허사건의 판결서뿐 아니라 형사 판결서에 대하여도 **임의어 검색을 허용**함으로써 소송관계인이 아닌 국민도 판결서를 용이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미확정 민사 판결서 선(先) 공개 입장

▣ 형사 판결서의 경우 민사 등 판결서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 형사 미확정 판결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상소심에 계속 되어 있는 경우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
-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서 판결서가 공개되면 결론이 바뀌어도 당사자는 이미 치명적 손해

▣ 형사 판결서의 경우 법무부도 신중검토 의견

- 판결 확정 전까지 피고인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특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미확정판결서 공개 시 **피해자** 등의 사생활 비밀 침해 또는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

▣ 현실적 고려

- 민사 등 미확정판결서만 먼저 공개한 후 **부작용 등 시행경과를 확인**하여 형사 미확정판결서 공개 여부 결정이 현실적으로 필요 ☞ **현재 대법원 입장**임

4.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 관련 법적 쟁점

가. 법적 근거의 문제

▣ 개요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와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은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대한 규정임
- **미확정 판결서**에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 필요

▣ 정보공개법의 적용 가능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판결서는 법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할 수 있음
- 법원은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국민들로부터 개별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 판결서를 공개하여 왔고,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전자우편 방식**의 판결서 사본 공개, **특별열람실 운영** 모두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하는 것임.

▣ 미확정 판결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 미확정 판결서가 공개되는 경우, 판결을 이미 선고한 재판부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서 공개로 인해 여론의 관심, 비판이 있는 경우 그것이 **상급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그 위험이 구체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공개 자체**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 여부를 **재량**의 영역에 두고 있음. 즉 비공개 대상 정보를 반드시 비공개해야 하는 것도 아님

▣ 확정판결서 공개만 규정한 민소법·형소법 조항과의 정합성 문제

- 문제점

- **확정** 판결서의 공개는 민소법·형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미확정** 판결서는 정보공개법이라는 일반법에 근거하므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정합성 측면에서 어색하다는 지적이 있음.

- 다른 한편으로 2011. 7. 18. 개정 **민소법·형소법**이 **확정** 판결서만을 공개 대상으로 하므로, **반대해석**상 **미확정** 판결서는 법률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음

[참고] 2011. 7. 18. 개정 민소법·형소법의 입법 경과

○ 제18대 국회에서 판결서 공개와 관련하여 **여상규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19]과 **박영선 의원**의 **'사법정보등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안**이 있었음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여상규 의원안을 기초**로 수정안을 만들기로 하였고, 이후 논의 과정에서 법원조직법이 아닌 민소법·형소법 개정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지게 됨

○ 당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법원소위가 구체적인 성안작업을 하였는데, 그 논의 과정에서 판결서 공개 범위를 확정된 사건으로 제한하게 된 것으로 보임

○ 당초 여상규 의원안은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되므로[20], 이후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확정/미확정을 기준으로 **공개 범위가 제한**한 것으로 추측됨

○ 미확정 판결을 공개범위에서 제외한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음

● 검토

- 법원은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확정/미확정 구분 없이 판결을 공개할 수 있고, 또 실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2011년 민소법·형소법 개정·시행 전에는 확정/미확정 구분 없이, 그 개정 후에는 전자우편 방식과 특별열람실 운영 방식으로 **제한적이나마 미확정 판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왔음.

- 즉 확정 판결만을 공개 대상으로 하는 **민소법·형소법 규정**은 판결서 중 **확정**된 사건의 공개 관련 절차 등을 규율하는 **정보공개법의 특별법 규정**으로

19)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② 제1항에 따라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재판의 판결서는 그 전문을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20) **당시 법원행정처**는 여상규 의원안에 대해 공개되는 판결서의 구체적인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의견을 회신하였음.

볼 수 있고[21], 민소법·형소법 조항이 있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며,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님**

- 공개 민감도가 낮은 확정판결은 특별법으로,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미확정 판결은 일반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법 체계상 어색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럼에도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 확대**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22]를 좇아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미확정 판결을 공개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23]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나. 미확정 판결 공개 관련 공무원 면책조항 부재 문제

▣ 문제점

- **확정** 판결서[24] 열람·복사의 경우, 민소법·형소법은 **담당공무원의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업무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임(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3항)

- 그런데 **미확정** 판결의 열람·복사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해야 하고, 거기에는 위와 같은 **면책규정이 없으므로**, 확정/미확정 사이에 면책규정을 두고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인 아닌지 문제됨. 이로써 담당공무원은 미확정 판결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거나 지나친 비실명 처리로 판결서 공개 확대의 취지를 반감시킬 여지가 있음

---

21)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타법우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22)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3)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4) 민사 등 판결서의 경우 2015. 1. 1. 이후, 형사 판결서의 경우 2013. 1. 1. 이후 각각 확정된 사건을 말함.

[참고] 판결서 공개 관련 국가배상소송 사례

○ 1987. 4. 20. 확정된 이혼사건 판결서에서 부모인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표시는 비실명처리 되었으나, 그 자녀인 원고들의 이름, 생년월일이 그대로 표시되어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하급심판결집, **인터넷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게시**되었음.

원고들은 2015. 3. 24.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하여 1심에서 **위자료 합계 150만 원**의 일부 승소판결(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72371) 받음(∵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됨.

○ 피고인 방00가 2016. 8. 26. 자신의 **미확정 형사 판결**이 공보판사를 통해 연합뉴스 기자에게 교부(**비실명처리 되어 있음**)되어 언론기사 및 악성댓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 기자, 연합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2019가합41766) ⇨ **청구기각**(∵공보 판사가 형사판결서 비실명 처리 후 기자에게 교부한 것에 **위법성, 고의·과실 없음**[25]),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562) 계속 중임

▣ 면책 규정의 실질적 의미 및 필요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것(2020. 8. 5.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26].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5)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판결의 공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는 점, 이를 반영하여 각 법원은 공보관을 두어 그 지역 법원의 홍보 및 언론 보도 관련 업무를 맡기고 있고, 해당 공보관도 법원 홍보 및 언론보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언론기관인 피고 연합뉴스의 기자 등 법원출입기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에게 법원홍보업무에관한내규 제1조, 제2조, 제3조에 근거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하기에 이른 점, 다만 공보판사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공개 당시 원고의 사생활의 보호를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원고는 물론 피해자 모두를 **비실명처리** 하였는바, 이는 형사사건 피고인인 원고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인에게도 확정된 형사판결문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 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미확정된 판결문에 대한 공개 요구 및 움직임도 점점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재판의 심리와 선고는 일반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고 기자로서는 관련 형사사건 재판의 방청을 통해 이 사건 기사 내용 정도는 쉽게 취재하여 보도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보판사가 **비실명처리**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피고 기자에게 열람시킨 행위만으로는 그 과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명예 또는 그 밖의 인격권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6) 2020. 2. 4.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었는데,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개념이 구체화·세분화 되었음.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판결서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는 경우, **법원**과 **담당공무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형사 처벌**(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도 받을 수 있음

- 확정 판결서 공개 과정에서 보장되는 면책규정은 절대적 면책이 아니라,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면책규정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분**임

- 2020. 2. 4.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2조 제1호 **가목의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임이 명백한 정보(**식별정보**, identified)를 말하고, **나목의 정보**는 그 자체로 명백하지 않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식별가능정보**, identifiable)를 말함

- 판결서 공개과정에서 성명, 주민번호 등 **식별정보**의 유출이 있는 경우, 거기에 **중과실**이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과실 면책 규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영역은 **식별가능 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임.

- **식별가능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법조문 자체로 보아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한 **판단의 영역**이고, 거기에는 경과실부터 중과실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의 과실 판단이 존재할 수 있

으므로, 민소법·형소법상 면책규정은 이 장면에서 규범적 의미가 있을 수 있음

- 그런데 미확정 판결 공개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경과실**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담당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어야만 **구상**이 가능함(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나아가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2조의 입법취지에 조화되는 올바른 해석이다." 라고 판시함.

- 즉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현행 민소법·형소법에 규정된 **면책 규정**은 **선언적 의미**를 갖는 외에 **실질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임

[참고] 면책 규정과 증명책임의 전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고의·과실이 없음' 을 증명해야 함.

○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서 공개와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원, 즉 **대한민국**이고, 법원사무관 등 **담당공무원은 아니라고 보임**[27].

27)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취급자**로 보임.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은 법원사무관 등 담당공무원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인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증명책임 전환 규정과 민소법·형소법상의 담당공무원 면책규정은 관련이 없음.

☞ 면책규정이 없다고 하여 법원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님.

▣ 면책 규정 부재 관련 기타 사항

● 대법원 규칙 등의 준수

- **민소법·형소법상 면책 규정**도 법원공무원이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를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므로(민소법 제163조의2 제3항, 형소법 제59조의3 제3항), 미확정 판결서 공개 시에도 담당공무원이 관련 **대법원규칙, 예규 등을 준수**한다면 구체적 사건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음. 담당공무원이 행정규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28]

- 현재 공개 대상 판결서의 비실명 처리 범위는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기준**(재일 2014-2)』 제4조[29]에 규정되어 있는데, 미확정 판결서가 위 조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되어 공개된다면, 담당공무원의 과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8)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어떤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6141 판결).

29) 제4조 (비실명 처리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서 등에 나타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성명, 명칭은 원칙적으로 모두 비실명 처리한다.
1. 해당 사건의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이거나 변호인인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 등을 포함한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판결서 등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비실명 처리한다.
1.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3.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사건관계인이나 제3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에 준하는 것

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책임 관련 인적 범위의 축소, 보험 가입**

- 현재 실무상 비실명 처리는 일선 법원 공무원이 아닌 비실명 사업소로 보내져 이루어지고 있고, 비실명 사업소 내 전담 사업자가 비실명화 조치를 수행하고, 이후 법원공무원이 표본 검사를 시행함. 즉 비실명 조치 잘못으로 인해 책임을 부담하는 법원공무원의 인적 범위가 넓지 않음[30]

- 미확정 판결서 공개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비실명 조치에 관여하는 법원공무원의 범위가 최소화되어야 함

- 비실명 조치에 관여하는 법원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 등이 고려될 수 있음

5. 분과위원회 논의

가. 기본적인 논의

1) 미확정 민·형사 판결서 공개 확대에 적극적인 입장

▣ **논거1: 국민의 알 권리 확대, 재판공개 원칙 실현**

●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헌법상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함이 마땅함.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은 **비실명조치** 등 보완조치로 해결해야 함

● 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4년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방식과 특별열람실 운영을 통해 **미확정 판결**을 **제공**하여 왔고, 주요 하급심 판결의 경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미확정 판결을 공개하여 왔음. 이는 모두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것임.

● **미확정** 판결서 공개는 과거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 **공개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공개의 **확대 여부**, 즉 미확정 판결서를 현재 확정 판결서와 같은 방

30) 비실명화 사업소 내 법원 관리 직원은 총 11명임(2020. 1. 1. 기준)

식(통합 홈페이지를 통한 임의어 검색)으로 공개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임

- 최근 확정 판결서의 공개 확대 과정에서 비실명화 조치 관련 인적, 물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므로,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 방식도 확정 판결서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논거2: 법관의 책임성 확보, 전관예우 폐해 방지

- 판결서 공개 범위의 확대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법관의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음. 이는 결국 **사법신뢰**로 이어짐
- 미확정 **형사** 판결의 공개를 통해 이른바 전관변호사가 변호한 사건의 양형 등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어, 전관예우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음

▣ 논거3: 법률상 근거가 있고, 면책 규정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음

-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에 따라 확정/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민소법·형소법 규정을 통해 비로소 확정 판결서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창설된 것이 아님[민소법·형소법 규정은 **설권(設權) 조항이 아님**].
- 확정 판결서 공개에 관한 **민소법·형소법 규정**이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 금지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미확정 판결서 공개 방식이 확대되는 경우, 그에 비례하여 담당공무원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그럼에도 면책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추후 **면책 규정**이 **입법**으로 마련되어야 함
- 그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면, 담당공무원의 **면책 규정 유무에 따라 그 수행 여부가 결정될 것은 아님**.
- 한편 **확정** 판결서 공개 관련 면책 규정은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상 담당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 나아가 담담당공무원이 대법원 규칙, 예규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면 구

체적 사건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또 실제 비실명 조치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소수이므로,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고려할 때, 면책 규정의 부재가 판결서 공개 확대 시행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2) 미확정 판결 공개에 소극적인 입장

▣ 논거1: 입법 사항임

- 우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등에 비추어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함
- 정보공개법이 있는 상황에서 2011년 개정 **민소법·형소법**은 확정 판결서의 전면적 공개만 규정하였으므로, 미확정 판결서는 전면적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입법적 결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 공개 민감도가 낮은 확정 판결서는 특별법인 민소법·형소법을 근거로 공개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미확정 판결서는 정보공개법이라는 일반법에 근거하여 공개하는 것이 **법체계상 어색**함
- 무엇보다 확정 판결서 공개에는 면책 규정이 있으나, 미확정 판결서 공개에는 면책 규정의 공백이 있으므로, 면책 규정이 입법화되지 않는 한 미확정 판결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은 면책 규정 없이 전자우편 방식으로 미확정 판결을 공개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현행 **전자우편 방식의 공개**는 개별 사건마다 별도로 검수가 이루어지므로, 면책 규정의 필요성이 적음
- 결국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요구되는 **입법 정책적 문제**이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논거2: 공개의 필요성이 높지 않음

- **미확정 판결**은 확정 판결에 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가 크고(특히 **형사판결**),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가 계속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음

- **형사 유죄 미확정 판결의 공개**는 **무죄추정의 원칙**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음
- 미확정 판결도 확정되면 결국 다 공개되는데, 위와 같은 부작용을 외면하고, 시급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는 주로 변호사 업계나 학계의 요구에 따른 것인데, 현재까지 공개된 확정 판결서로도 변론 준비를 하거나 학술 연구를 하는 데 부족함이 없음
- 비교법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많은 판결서를 공개하는 나라를 찾기 어려움[31]
-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 확대보다는, 현재 법원이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정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정 판결서 공개에 대한 **홍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검색기간 확대, 수수료 면제 등과 같이 확정 판결서 공개 편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민사 등 판결서 先공개 입장

-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체로 찬성함
- 다만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의 경우, 확정 판결서 공개에 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확정 형사판결서 공개**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민사판결서보다 매우 높으므로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헌법상 사생활의 권리**도 알 권리 및 재판공개 원칙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임

31) 한국의 확정 판결 공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현재의 판결공개가 충분할지언정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전원열, “판결 공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저스티스 통권 제168호 (2018. 10.), 60].

- 상대적으로 사생활 침해의 염려가 적은 **민사(특허, 행정 포함)** 미확정 판결서부터 공개를 확대하고, 그 시행 경과나 입법 경과 등을 보고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여부를 **추후 결정**해야 함

- **확정 판결서**와는 달리 **미확정 판결서**를 법원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고, **정보공개법 제6조 제2항**[32]은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노력 의무**가 있음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정책결정**을 통하여 민사 판결서만을 우선적으로 확대 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나. 구체적 논의

▣ [1] 단계적 확대(미확정 민사 등 판결서 先공개) - 4명

▣ [2] 원칙적으로 소극적, but 시행 시 단계적 확대 - 3명

-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에 **원칙적으로 소극적**임
- 다만 공개 확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민사 등 판결서부터 공개함이 타당함
- 위 3명 중 **2명의 위원**은 **제1심 민사 미확정 판결서**는 바로 공개 대상이 되지 않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사실심이 종료된 이후, 미확정 항소심 판결서와 함께 공개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3] 민·형사 판결서 모두 공개 확대 – 2명[33]

- 현재 시행 중인 **확정된 형사** 판결의 공개에 별 다른 문제가 제기된 바 없고, 이는 **미확정** 형사 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임. 즉 **미확정 형사** 판결 공개에 대한 우려가 구체적이지 않음
- 특히 **전관예우 폐해 방지**를 위해 미확정 **형사** 판결서도 공개되어야 함[34]

32)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3) 2명 모두 변호사 위원임.

34) 전관예우 감시는 판결서 공개의 핵심 논거가 되기 어렵고, 이는 현행 미확정 판결서 공개 방식(특별열람실, 전자우편 신청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반론이 있었음.

▣ [4] 원칙적 소극, but 시행 시 민·형사 모두 공개 - 1명

-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에 원칙적으로 소극적임
- 공개 확대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지에 비추어 민·형사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이유는 없음

V. 공개 시기 및 공개 방법

1. 공개 시기

▣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를 위한 준비기간 필요

- 확정 판결서 공개에 관한 2011. 7. 18. 개정 민소법·형소법은 그 시행을 위해 형사 판결의 경우 약 1년 6월, 민사 판결의 경우 약 3년 6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였음
- 미확정 판결서를 현행 확정 판결서와 같이 통합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공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후 준비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요구**됨
- 구체적인 기간은 추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산정보국 등과 협의 후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시행 이후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적용함 (소급 적용 ×)

- 정책 결정 후 시행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결정되는 경우, 그 **시행 시기 이후 선고된 미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확정 판결서 공개에 관한 2011. 7. 18. **개정 민소법·형소법**도 법 시행 이후 확정된 판결을 대상으로 공개를 규율하고 있음

▣ 판결의 확정 여부를 기다릴 필요가 있음

- **미확정 판결서**가 통합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시기를 판

결 확정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① 판결서 공개 과정에서 확정/미확정 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판결 선고와 동시에 공개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당사자가 판결서를 송달받기도 전에 공개가 먼저 이루어질 염려가 있는 점, ③ 판결서에 비공개 신청 안내서를 첨부하여 송달하므로[35], 당사자의 비공개 신청권을 일정 기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판결의 확정 여부를 기다릴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상소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확정/미확정 판결서를 구분**한 후 판결서 공개를 위한 조치를 시행함이 바람직함

2. 공개 방법

가. 통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임의어 검색 포함)

-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 방식을 종래보다 확대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방식을 현재 확정 판결서 공개의 경우와 달리 할 필요는 없음

- 즉 통합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개되는 판결서가 **확정/미확정 판결인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나. 편집이 가능한 TEXT_PDF 형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여부

▣ **현황**

- 현재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 판결서를 다운로드 할 경우, 다운로드 된 파일은 텍스트 형태(편집 등 가능)가 아닌 이미지 파일(편집 어려움) 형태임

- 비실명화 검수시스템에서 이미지 PDF로 변환되어 제공됨

▣ **견해 대립**

35)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제5조 제3항,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제3조의3 참조.

● **TEXT 형태**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

- 재판준비나 학술연구에 이용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판결문 제공이 필요함
-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형태로 판결문을 제공하여도 대형로펌 등에서는 파일을 TEXT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파일변환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보 격차가 심화**됨
- 적절한 데이터 학습을 통한 사례기반 인공지능이나 심층학습 기술의 발달을 위하여 판결서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의 필요성과 편의성이 강조됨
- 재판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은 점차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므로, 같은 취지에 따라 TEXT PDF 형태로 제공하여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타당**함

● **현행(이미지_PDF) 유지 입장**

- 현재 제공되는 임의어 검색 기능만으로도 학술연구 이용 등에 큰 어려움이 없음
- 이미지 제공의 경우보다 편집·수정이 월등히 용이해짐 ⇨ 다운로드한 판결문을 편집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서 창출 등 **악용가능성**
- 빅데이터, 학술연구 이용 등의 필요성보다 **판결서에 대한 신뢰,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함

다. 분과위원회 논의[36)]

▣ TEXT_PDF로 제공하자는 입장 (5명)

● 이미지 형태로 판결서가 제공된다고 하여 악용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님

● TXT_PDF 형태의 파일 제공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이지 않음**

36) 2020. 8. 24. 제8차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의견임. 총 10명 중 이흥구 위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되어, 조정민 위원은 재판으로 인해 각각 불참하였음.

- 미국 법원도 편집이 가능한 TXT_PDF 형태로 판결서를 제공하고 있음.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TXT_PDF 형태로 파일이 제공되어야 함
-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선고되는 판결서부터 TEXT PDF 방식을 적용함이 바람직함

▣ **이미지 형태의 현행 유지 입장 (3명)**

- **판결의 신뢰도, 안정성**이라는 공익상 이익이 변론 준비, 연구 편의라는 사익보다 중요함
- 이미지 형태로 제공되어도 학술연구 이용 등에 큰 어려움은 없음

Ⅵ. 보완 조치

1. 미확정 판결서에 대한 공개제한 신청권 인정 여부

가. 쟁점

▣ **미확정 판결서 관련 공개제한 신청권의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음**

- 현행 **민소법 163조의2, 형소법 제59조의3**은 모두 **확정** 판결서 공개 및 그 **제한 등을 규정**함.
- 위 법률 규정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위임받은 **대법원 규칙** 또한 그 **목적이나 적용범위에 규정된 것과 같이 확정** 판결서 공개 및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임.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3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제5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163조의2**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등 법 제163조의2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서(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즉 당사자의 **미확정** 판결서 **공개 제한 신청권**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는 셈임. 그러나 **미확정 판결서**는 확정 판결서보다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당사자에게 **공개 제한 신청권**을 인정할 필요가 큼

▣ 현행 법률 조항, 규칙의 적용 또는 유추 적용 여부, 규칙 개정 등을 살펴봄

나. 현행 법률의 적용 가능성

▣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 복사, **재판서** · 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 · 등본 · 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 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제163조의2(확정 판결서의 열람 · 복사)

④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 · 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⑤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소송기록 공개의 인적 범위 제한**에 관한 규정[37]으로,

37) 민사소송법 **제162조**가 소송기록 열람 등 청구권자를 당사자 이외의 자로 확장한 것에 대응하여 **제163조**는 그 제한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임.

소송기록 중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부분(사생활, 영업비밀)에 대한 열람 등 청구권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일종의 당사자의 공개 제한 신청권 규정인데, 소송기록에는 **판결서**가 포함되므로, **미확정 판결서**의 경우에 위 조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 제한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무상으로도 **영업비밀 사건**의 판결 선고 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확정과 무관하게,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63조**를 근거로 열람·복사 제한 결정을 하고 있기도 함
- 즉 민소법 제163조가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 제한 신청권을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공개 제한 신청권** 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음[38].
- 그에 더하여 **확정** 판결서 공개 및 제한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 163조의2**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미확정 형사 판결서의 경우

- **형사소송법**에는 미확정 형사 판결서에 관한 **공개 제한 신청권**의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려움**
- 다만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하는 경우, 헌법 제17조에 규정된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확정 판결서에 비하여 당사자의 **공개 제한 신청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확정 판결서 공개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다. 대법원 규칙 및 예규의 개정

☞ 아래 기재된 개정안은 모두 예시에 불과함

▣ 민사판결서 관련

-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제1조, 제2

38)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은 열람제한 등 결정의 **법적 근거**로 **제163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기도 함.

조에서 **확정** 판결서 공개를 적용범위로 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위 규칙이 미확정 판결서도 규율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중 적용범위, 비실명처리 시기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제5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163조의2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제5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판결서(미확정 판결서를 포함한다)**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등 법 제163조의2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서(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등 법 제163조의2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서(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와 2021. ○. ○.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특허사건 등 미확정 판결서에 대하여 적용한다[40].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41]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등 법 제163조의2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본안사건(다만, 2014. 12. 31. 이전에 확정되거나 「소액사건심판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사건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등 법 제163조의2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본안사건(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과 2021. ○. ○. 이후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사건 등 본안사건에 대하여 적

	용한다.
제3조 (비실명 처리) 민사・행정・특허 사건 등 법 제163조의2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대법원 재판사무국 소속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 이라 한다)가 지체 없이 판결서에 대하여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비실명 처리)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상소기간이 경과하면**, 대법원 재판사무국 소속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 이라 한다)가 지체 없이 판결서에 대하여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 형사 판결서 관련

- 『형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제1조에서 **확정** 판결서 공개만을 규율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위 규칙이 미확정 판결서도 규율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형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중 비실명 처리 시기를 ‘판결 확정 후’로 정하고 있는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형사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판결서(미확정 판결서를 포함한다)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39)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가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조항은 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5항이 전부이므로, 현행 규칙 중 “그 밖에 법 제163조의2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 부분은 기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위 ‘법 제163조의2에 따른 판결서’는 확정 판결서를 의미하므로,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부분을 삭제하고, 괄호로 ‘미확정 판결서가 포함’됨을 명시하였음.

40) ‘미확정 민사 등 판결서 공개 확대 시행일 이후 선고된 판결서’가 적용범위임을 명시하였음.

41) 현행 예규 제1조는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와 그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 앞서 본 것과 같이 ‘규칙’이 개정되는 이상, 예규 제1조를 개정할 필요는 없음

한다.	적으로 한다.[42]
제5조(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선고되어 상소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상소기간이 경과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열람·복사의 제한) ②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말한다)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법 제59조의3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제1항의 판결서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열람·복사의 제한) ②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말한다)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법 제59조의3 제1항 제5호 단서에 따라 **~~제1항의~~ 판결서**[43]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에 관한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해당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제3조 (비실명 처리) 대법원 재판사무국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판결서 등에 대하여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비실명 처리) 대법원 재판사무국 법원사무관 등은 형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어 상소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판결서 등에 대하여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42)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이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조항은 같은 조 제2항, 제6항이 전부이므로, 현행 규정 중 "그 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 부분은 기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위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는 확정 판결서를 의미하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괄호로

2. 비실명처리 관련

가. 비실명 처리 현황

1) 비실명화 사업소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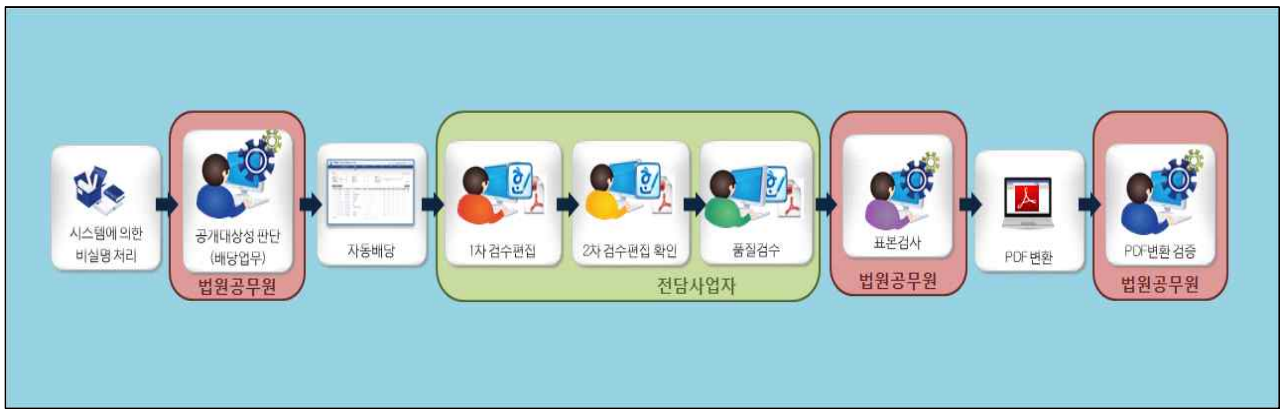

판결문 데이터 접수 → **1차 비실명 편집**(사업자 수행)[44] → **2차 비실명 편집 확인**(사업자 수행)[45] → **품질검수**(사업자 수행)[46] → **검사(법원관리자)**[47] → PDF파일로 변환 → PDF변환 검증(법원관리자)

2) 현 비실명화 작업 외주 인력 및 예산

▣ 2020년 계약현황(2020. 1. 1. 기준)

구분	판결서 공개(비실명화) 내역				예산 (계약금액)	계약업체 (지분비율)	비고
	공개사건		전자우편 제공사건	소계			
	형사사건	민사사건					
2020년도	24만건	21만건	5만건	**50만건**	**31.64억 원**	㈜디앤디기술(90%), ㈜스토리안트(10%) 컨소시엄	1년 계약/ 매년 사업자 재선정

'미확정 판결서가 포함'됨을 명시하였음.

43) '제1항의 판결서'는 '확정 판결서'를 의미하므로, '제1항'을 삭제하였음.

44) 1차 검수편집자는 검수 대상 판결서 등을 조회하여 검수목적에 맞게 검수편집을 완료하고 검수시스템에 등록함

45) 2차 검수편집 확인자는 1차 검수편집자가 검수한 판결서를 대상으로 비실명화 검수 및 편집을 실시함

46) 표본추출의 기준 모집단은 처리 대상량에 따라 사건유형, 선고법원 등이 될 수 있고, 표본 검수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모집단 전체를 재작업 처리함

47) '품질검수'를 통과한 판결서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 검사팀에서 표본 검사**를 통해 검사를 수행함. 검사결과가 정상이면 작업결과를 검사승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검사불가 처리함. 검사불가 처리된 경우 해당 모집단 전체를 재작업 처리 함[현재 확정 판결서 인터넷 공개 사건은 **25% 샘플링 검사**, 전자우편 제공신청사건은 전수 검사]

▣ 판결서 비실명화 사업소 인원 구성현황(2020. 1. 1. 기준)[48]

구분			투입인원(명)	비고
전담 사업자 인원	관리인원		7	
	작업 인원	공개사건(형사)	32	
		공개사건(민사)	30	
		전자우편 제공사건	10	
	소계		79	
법원 관리 인원	업무총괄		1	
	사업관리/서무		1	
	검수 업무		9	
	소계		11	

3) 현 비실명화 작업 시스템 연간 최대 가동 범위

- 현재 구축된 시스템으로는 **연간 최대 70 만 건 정도**의 비실명화 작업처리가 가능
- 70만 건 처리에 필요한 연간 최소 인원은 98명으로 예상됨

4) 지능형 비식별화 솔루션 추진 현황

▣ 지능형 비식별화 솔루션 개요

-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 이하 '**비실명처리 기준**')에 따라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자동 비실명처리
- **기계학습**(머신러닝) 및 **지식작업**을 통해 반복 학습함으로써 비실명 정확도를 향상시켜 비실명화 사업소의 업무효율 증대 추진

▣ 사업추진 경과

- 2018년(1단계): 민사, 특허 판결서 비식별화 기계학습 시스템 구축
- 2019년(2단계): 형사, 행정 판결서 비식별화 기계학습 시스템 구축

48) 업무량에 따라 외주 업체에서 자체 인원 증감시킴

● 2020년: 2019년 사업 이후 생성된 판결서에 대한 검증테스트 및 솔루션 기능 개선
⇨ 고도화 사업

나. 비실명 처리 방식 관련 설문조사

1) 법관 대상

▣ **기간: 2018. 4. 16. ~ 4. 27.**

▣ **대상: 전국 법관 2,983명 중 응답자 1,117명(응답률 37.45%)**

▣ **비실명 처리 방법**

● **현행 유지 66.16%** > 변경 32.95%

- 변경 중 강화 20.95% > 완화 12%

2) 법원 직원 대상

▣ **기간: 2019. 6.**

▣ **응답 인원수: 204명**

▣ **미확정 판결에 대한 비실명 처리 필요 여부**

	① 비실명처리 필요	② 실명공개 무방	③ 면책 전제 실명공개 무방	④ 의견없음	합계
비율	**71.4%**	2.5%	18.7%	7.4%	100.0%

▣ **미확정 판결을 실명으로 공개할 경우 민원 발생 여부**

	① 증가한다	② 별다른 변화 없음	③ 잘 모르겠음	합계
비율	**75.9%**	9.4%	14.8%	100.0%

▣ **미확정 판결을 비실명으로 공개할 경우 민원 발생 여부**

	① 증가한다	② 별다른 변화 없음	③ 잘 모르겠음	합계
비율	36.9%	38.9%	24.1%	100.0%

3) 대한변호사협회

▣ **기간: 2018. 5. 31. ~ 6. 7.**

▣ **전국 회원 중 1,586명 응답**

● 비식별처리 **완화**

- **찬성 78%** > 반대 21%

다. 미확정 판결에 대한 비실명처리 방식의 차별화 여부(소극)

▣ **문제점**

● 현재 비실명처리는 확정/미확정 구분 없이 **비실명처리 기준**(예규)에 따름.

● 그런데 **미확정** 판결서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함을 전제로, 확정 판결서 보다 강화된 비실명처리를 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음

▣ **검토**

● 확정 판결서의 경우도 현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비실명처리되고 있으므로, 더욱 강화된 비실명처리 기준 설정에 난점이 있음

● 확정/미확정 판결서의 비실명처리 기준을 달리 하는 경우, 미확정 판결서의 비실명처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개발 및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추가 예산 지출**이 필요함

● 비실명처리 기준을 달리 할 경우, 판결 확정 전·후 비실명처리의 기준이 다른 2가지 버전의 판결서가 존재하게 되어 혼란을 줄 수 있고, 비실명처리 수준의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라. 비실명처리에 대한 방향성

1) 비실명처리 기준 예규 개정 연구반 활동 (사법지원실)

▣ **배경**

● 현행 비실명처리 방식은 판결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 적어도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명은 비실명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함

● **가독성 개선**을 위해 **법원도서관 방식**[49]의 **비실명처리 기준 개선** 검토

- **법원도서관 방식**은 비실명처리 정보의 **성격**을 알 수 있음

- **[예시]** 현행(원고 A, B, C) ⇨ 법원도서관(원고 1, 소외 1, 소외 2)

▣ **2020. 6. 25. 최종 보고**

● [경과] 2020. 4. 21. 제1차 회의, 2020. 5. 12. 제2차 회의

● **결론의 요지**

- **[비실명화 사업소]** 현재의 지능형 비식별화 시스템으로 **구현 어려움**

- **[전산정보국]** 현재 구축된 시스템으로 원칙적으로 **개선 불가**, 다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는 법원도서관 방식이 가능함

- **[법인명 비실명 문제]** **현행 유지**가 연구반 다수 의견임

2) 비실명처리 방향에 대한 분과위원회 논의

▣ **판결서 공개를 확대하면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실명처리는 필수적임. 다만 현행 비실명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가독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

▣ **지능형 비식별화 시스템을 통해 다량의 판결서를 일괄적으로 비실명처리하**

49) 법원도서관 방식은 수작업으로 진행됨

는 현재의 방식 하에서 가독성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장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맞게 판결서에 나타난 개인정보를 적절히 비실명처리 하면서도 판결서의 가독성 개선을 위해 시스템 정비 등 인적·물적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Ⅶ. 사법행정자문회의 주요 논의 사항

1.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 여부

▣ 정보공개법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 면책 규정의 부재 문제

▣ 민사(행정·특허 포함) 판결서부터 선공개할 것인지, 형사 판결도 함께 공개할 것인지, 법 개정 전에는 공개 확대가 어려운 것인지

2. 공개 시기 및 방법

▣ 공개 확대 시행 이후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판결의 확정 여부를 기다릴 것인지

▣ 편집이 가능한 TEXT_PDF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3. 보완조치

▣ 당사자의 공개제한 신청권을 인정할 것인지

- 확정 판결서 공개 관련 민소법·형소법 규정의 **유추 적용** 여부
- 대법원 규칙, 예규의 개정 여부

▣ 비실명처리의 방향성